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사물품 용역 대금 등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허용〉
■ 문진석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57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물품 용역 대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 로 지급 허용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진석의원 등 11인
2. 제안연월일 : 2025. 11. 27.
3. 회부연월일 : 2025.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나 지방공무원의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한국행정연구원의 정책연구용역(2022년)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총 공급액 비율이 증가할 때, 적용업종의 평균 매출액, 평균 종사자수 및 사업체 수 등이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서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승수효과가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대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

고자 함(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6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 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지방자치단체의 공사·물품 용역 대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허용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대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u>	제13조(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 ----- <u>「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u>
1. <u>「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u>	<u><삭 제></u>
2. <u>「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u>	<u><삭 제></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경과규정)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현행은 동법 제13조에서 근로자와 지방공무원의 임금 또는 보수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대금 등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이는 임금 및 계약대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계약상대방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임.

그러나,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서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승수효과가 발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주장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상대방이 합의하면 공사·물품·용역 대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정통화(현금)와 비교할 때, 그 사용지역, 사용기간, 유통범위 측면에서 상당히 제한적이므로, 계약의 대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용역·물품계약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사업체가 받는 계약대금은 기업의 운영자금(인건비·경상비)으로 활용되나, 상품권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 원재료 구입비, 조세, 공과금, 협력사 대금 등을 지급하기 곤란함.

[현금 및 지역사랑상품권 비교]

구 분	현 금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지역	전국 어디서나	해당 지역 內
사용기한	제한없음	5년 등 제한
유통범위	근로자 임금, 협력업체 대금, 원재료 구입비, 제세, 공과금 등	해당 지역 內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또한, 개정안은 계약대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전제하고 있으나, 사실상의 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로 인하여 합의를 명목으로 공사·용역·물품공급 업체가 손해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음.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계약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체에게 재산권의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 및 공사·용역·물품 계약에서 대규모 상품권 물량이 유통될 것이므로, 부정유통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3